

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81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4. 15.

발 의 자 : 이 훈 · 기동민 · 강창일

신창현 · 김병기 · 송갑석

김성수 · 박 정 · 송옥주

정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력기술인에 대한 증명서나 설계사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.

하지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과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 등 위법행위 시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.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은 현재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,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 운영요령 고시에 명시되어 있음. 이로 인해 경력인정과 위법 시 처벌 및 경력인정취소의 법제도적 근거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.

이는 전기공사기술자나 소방기술자와 같이 경력관리와 취소에 대한 법적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사례와 대조되는 것임. 이에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인정에 대한 규

정을 협행법으로 이관하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협행법에 마련하고자 함(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).

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을 “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전력기술인의 인정)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이하 “경력수첩”이라 한다) 또는 경력확인서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, 기술자격·학력·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)”를 “(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”을 “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를”로 한다.

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전력기술인의 인정취소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를 빌려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설계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전력기술인”은 “설계사”로, “인정”은 “면허”로, “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”는 “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”로 본다.

제12조제3항 중 “확인받은”을 “인정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감리원의 인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전력기술인”은 “감리원”으로, “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”는 “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”로 본다.

제2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11조제2항에”를 “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”로, “발급”을 “발급 및 그 취소·정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2조제3항에”를 “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”로, “확인”을 “인정 및 그 취소·정지”로 한다.

1의2.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·정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8조(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 금지)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이하 “경력수첩”이라 한다) 또는 경력확인서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, 기술자격·학력·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) -

----- 경력수첩 또는 경력
확인서를 -----

제8조의2(전력기술인의 인정취소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

제11조(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) ① ~ ⑥ (생략)

<신설>

⑦ (생략)

제12조(공사감리 등) ① · ② (생략)

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
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 수첩 또는 경력확인서를 빌려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1조(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설계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전력기술인”은 “설계사”로, “인정”은 “면허”로, “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”는 “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”로 본다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12조(공사감리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<p>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<u>확인받은</u> 사람이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⑨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-----인정받은-----. -----.</p> <p>④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감리원의 인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.</p> <p>이 경우 “전력기술인”은 “감리원”으로, “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”는 “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”로 본다.</p>
<p>제27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(생 략)</p>	<p>제27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<u>제11조제2항에</u> 따른 설계사 면허의 <u>발급</u></p> <p>3. <u>제12조제3항에</u> 따른 감리원의 자격 <u>확인</u></p>	<p>1의2.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·정지</p> <p>2. <u>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</u>----- -----발급 및 그 취소·정지</p> <p>3. <u>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</u>----- -----인정 및 그 취소·정지</p>
<p>4. · 5. (생 략)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